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제27차 위원회 -

2026. 1. 6.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제27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계획

## 1. 개요

- 일시: '26. 1. 6.(화) 15:00 ~ 17:00 \* 회의 종료 후 만찬 예정
- 장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4층 창조룸
- 참석대상 : 위원장, 본위원, 언론사, 사무국 직원 등 70여명
- 안건(안)
  - (위촉장 수여)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보고 2건) ①김호 위원장 취임 후 주요 추진사항, ②분과위원장 (농업, 수산업, 임업, 농어촌, 농수산식품) 지명 현황
  - (심의 1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안)
  - (토론 2건) ①기획자문회의별(3농, 수산, 임업) 발굴 의제(안) 보완 방향, ②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약칭(안)

## 2. 세부 일정[안]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5:00~15:05 (5')	○ 안내 및 국민의례	
15:05~15:15 (10')	○ 참석자 소개 및 성원보고	총괄기획팀장
15:15~15:20 (5')	○ 위원장 인사말씀 및 개회선언	
15:20~15:40 (20')	○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위원장
15:40~16:50 (70')	○ 안건 심의·보고 5건	사무국장
16:50~17:00 (10')	○ 기타 사항 논의 및 폐회	위원장

※ 상기 일정 및 안건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불임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위원장	김 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위 원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 석	해양수산부장관
	공 석	기획예산처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강혜정	전남대학교 교수
	김맹철	광양시 어민회 회장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김선일	지유팜 대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류진호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회장
	박 현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양승룡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이상귀	해남황칠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정은조	한국산림휴양협회 회장
	최홍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기형	한살림 아산시 상임위원
	허현중	(재)지역재단 이사장
	홍충희	제주어류양식수협 감사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민간위원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기재

# 목 차

## <보고 안건>

- 김호 위원장 취임 후 주요 추진사항 ..... 3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 지명  
현황 ..... 11

## <심의 안건>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안) ..... 17

## <토론 안건>

- 분야별 기획자문회의 발굴 의제 ..... 31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약칭(안) ..... 59



제 27 차 위 원 회

---

보 고 안 건  
[ 2건 ]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 김호 위원장 취임 후 주요 추진사항

2026. 1.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김호 위원장 취임 후 주요 추진사항

## I.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 ① 농어업단체 간담회

- (실적) 농어업계 의견 수렴 및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주요 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10회\*) 개최
  - \* (농업) 7회(50개 단체) / (임업) 1회(15개) / (수산) 2회(16개) 등
- (성과) 간담회 의견 중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의제화하고, 단순 민원 등은 부처에 이관하여 이행상황 점검
  - 주요 농어업연합단체 대표 등을 초청, 보고회(25.11.25.)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류 추진

### ② 농어업 전문지 및 일간지 기자단 간담회

- (실적) 이재명 정부 농어업정책 및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등 관련 질의응답 등을 통해 기자단과 소통(4회\*) 추진
  - \* (전문지) 2회(농업 21명, 수산 8) / (일간지) 2회(농식품부 19명, 해수부 18명)
- (성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

### ③ 청년농업인 간담회

- (실적) 청년농업인 간담회\*(25.10.28)를 통해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 등을 제시할 거버넌스 기구의 운영 필요성 등 확인
  - \* (참석)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8개 청년농업인단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등 36명
- (성과) 농업 세대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 도출과 토론, 공론 형성을 위한 청년농포럼\* 결성(25.12.29.)
  - \* (구성) 청년농업인단체 대표 등 청년농 17명('86년생~'02년생)
  - \* (추진체계) 정기회의(의제발굴·토론) → 선배농업인 등과의 간담회 → 정책토론회 등

## ④ 타운홀 미팅

-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현장 소통을 위해 9개도와 공동으로 새정부 및 각 도별 농어업정책 방향 발표 및 현장 의견 수렴 추진
  - \* (대상) 전국 9개도, (운영) '25.12.1.~'26.2.6., (실적) 충남('25.12.1.) 300여명 참석
  - \* (계획) 전북('26.1.13.), 경기(1.15.), 경북(1.20.), 강원(1.23.), 전남(1.27.), 제주(1.29.), 충북(2.3.), 경남(2.6.)

<붙임1>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추진계획

## II.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 ① 특별위원회 신설 · 운영

-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과 수렴된 정책안을 부처에 제안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 농정 핵심 과제 중 조속히 현장의견을 수렴해야 할 과제 3건(농어촌기본소득, 농어촌 재생에너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특위를 우선 신설

- (농어촌기본소득 특위) 농어촌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본사업 세부추진방안 등 논의
  - \* (위원장) 차홍도, (위원) 15명, (기간) '25.10.1. ~ '26.9.30(1년), (실적) 1~3차 전체회의 개최
- (농어촌재생에너지 특위) 영농형태양광 및 햅빛소득마을, 바이오에너지 등 관련 수법사례 분석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 \* (위원장) 한석우, (위원) 15명, (기간) '25.12.11. ~ '26.12.10.(1년), (실적) 1차 전체회의 개최
- (여성농어업인 특위)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방안 등 의제를 설정하고, 연구용역 및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정책과제 도출
  - \* (위원장) 정영이, (위원) 15명, (기간) '25.9.23. ~ '26.9.22.(1년), (실적) 1·2차 전체회의 개최

## ② 분야별 기획자문회의 신설 · 운영

- ◇ 다양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 효능감 있는 중장기 의제 발굴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자문회의(3개) 운영

- (3농 기획자문회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 농어촌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등 3건의 연구용역 기획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과 소득정보체계 개편' 등 11건의 중점 추진과제 발굴
  - \* (구성) 김호 위원장 외 농어업 관련단체 11명, (운영) '25.9.19.~ , (실적) 1~7차 자문회의 개최
- (수산 기획자문회의) '낚시문화 발전방안', '연근해 조업구역 구분 방안' 등 수산업 분과위원회 논의 과제(안) 4건 발굴
  - \* (구성) 수산정책어업·양식·낚시 등 전문가 9명, (운영) '25.11.4.~ , (실적) 1~3차 자문회의 개최
- (임업 기획자문회의) '임업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제 · 재해보험 · 임업세제 개선',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산촌정책 체계 개편' 등 임업 분과위원회 논의 의제 3건 발굴
  - \* (구성) 임업분야 전문가·단체·부처 등 8명, (운영) '25.11.3.~ , (실적) 1·2차 자문회의 개최

## ③ 현안 과제 대응

- ◇ 농협 비리 문제, 농지 유동성 저하 등 현안 과제 대응을 위해 국회 토론회 개최 및 관련 자문회의 운영

- (농협문제 국회토론회)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의 주제로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
  - \* (일시) '25.12.11.(목) 14: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참석) 주최 의원 등 70여명
  - \* (주최) 문금주, 윤준병,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의원 / (주관) 우리 위원회
- (농지제도 자문회의) 농지 유동성 저하,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으로 농지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농지법 개정안 33건\* 발의)됨에 따라 농지제도 전반을 재검토 후 당·정·청에 자문의견 전달
  - \* (개정안) 농지활용도 제고(9건), 농지 관리 체계 개선(6건), 농지 유동성 촉진(18건)
  - \* (구성) 조병옥(전농) 단장 외 전문가 7명, (운영) '25.11.26.~ , (실적) 1~2차 자문회의 개최

<붙임2> 김호 위원장 취임 후 주요 간담회 개최 등 세부내역

## 불임1

#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추진계획

## I

### 추진배경 및 목적

-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 지시(25.7.13.)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정부와 현장의 가교로서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지역과 밀접하게 직접 대화·소통·협력하여 지역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안 도출

## II

### 행사 개요

- 행사명 :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 일정 및 내용
  - (시기) '25. 12월 ~ '26. 2월 6일까지
  - (지역) 전국 9개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별 순회 개최
  - (운영)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주관) 광역 지자체
  - (참석) 지역별 100명 이상(농어업인 및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 (방식) 국정과제(위원회) 및 도정과제(지자체) 설명 후 위원장 주재 의견청취
  - (역할) 원활한 간담회 추진을 위해 위원회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 위원회 : 의제준비(국정방향 중심), 간담회 진행 등
    - 지자체 : 의제준비(지역 현안중심), 지정자·참석자 및 현장방문지 섭외 등
    - 공통 : 행사장 준비, 운영방식 조율 등

## III

### 세부 운영계획(안)

시간	소요	내용	비고
14:00~14:10	10 '	○ 개회식(국민의례, 내빈소개)	
14:10~14:20	10 '	○ 인사말씀(위원장, 도지사 등)	
14:10~14:30	10 '	○ 기념촬영	
14:30~14:45	15 '	○ 주제1) 새정부 농산어촌 국정과제	사무국장
14:45~15:00	15 '	○ 주제2) 도정과제 및 농정방향	지자체
15:00~16:30	90 '	○ 농어업인 의견 청취	위원장
16:30~	5 '	○ 정리 및 폐회	

## IV

## 지역별 일정

순서	소속		일정	시간	장소	참석
	도	실과소				
계	9개소					
1	충남	농업정책과	'25.12.01.(월)	15:30	스플라스리솜	400명
2	전북	농생명정책과	'26.01.13.(화)	10:30	전주 그랜드힐스턴	120명
3	경기	농업정책과	'26.01.15.(목)	14:30	수원컨벤션센터	120명
4	경북	농업대전환과	26.01.20.(화)	14:00	스탠폴드호텔 안동	100명
5	강원	농정과	'26.01.23.(금)	14:00	춘천베어스호텔	100명
6	전남	농업정책과	'25.01.27.(화)	14:00	스카이웨딩컨벤션	100명
7	제주	친환경 농업정책과	'26.01.29.(목)	10:30	아젠토피오레	100명
8	충북	농업정책과	'26.02.03.(화)	14:00	충남대 대통령기념관 영빈관	100명
9	경남	농업정책과	'26.02.06.(금)	14:00	그랜드 앰버서더	100명

## V

## 홍보계획

## □ 지자체와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입체적 홍보 추진

- (언론) 보도자료\* 배포 \*중앙매체, 전문지, 지역언론 등
- (단체) 중앙 및 지역 농어업 관련 단체에 홍보 및 참여 요청
- (온라인) 위원회 및 지자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홍보

\*행사 관련 쇼츠, 홍보영상, 실황영상 등 제작 활용

- (현장) 현수막, 포스터, 배너 등 홍보물 부착

**불임2****김호 위원장 취임 후 주요 간담회 개최 등 세부내역****□ 실적 총괄표**

구분	합계	국회토론회	타운홀미팅	농어업단체	기자	특별위원회	자문회의
간담회 등	42회	1	1	10	4	12	14

**□ 분야별 세부 내역**

구분	날짜	주요 논의 내용	비고
국회토론회	'25.12.11.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 발제 및 토론	(주최) 문금주, 윤준병,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의원
타운홀미팅	'25.12.1.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1차) 충청남도
	'25.8.25.	장기적 농림수산업, 농산어촌 비전 및 과제설정 필요 등	농민의 길
	'25.9.3.	재정확보를 기반으로 식량안보 강화 등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25.9.8.	기후위기에 상응할 수 있는 재해보험 현실화 등	한국농축산연합회
농어업단체 간담회 (10회)	'25.9.15.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재난·보험제도 개선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5.9.16.	수산업계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등	수산단체장
	'25.9.17.	임업인단체와 임업현황,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임업단체장
	'25.9.29.	식량안보를 위한 기후대응 및 국산 밀 소비 확대 등	전국먹거리연대
	'25.10.28.	청년농업인 정책 수혜대상자 및 검증 강화	청년농업인
	'25.10.29.	수협 대손충당금 비율 상향 유예 등	경북지역 어업인
	'25.12.29.	농업 세대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 도출 등	청년농업인
기자간담회 (4회)	'25.9.11.	농업정책 및 기관 운영 관련 질의응답	농업 전문지 기자
	'25.9.17.	어업정책 및 기관 운영 관련 질의응답	수산 전문지 기자
	'25.9.22.	농림축산식품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	농식품부 출입기자
	'25.10.1.	해양수산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	해수부 출입기자
특별위원회 (12회)	'25.9.18.	농어촌기본소득 특위 사전 간담회	농어촌기본소득 특위
	'25.10.1.	농어촌기본소득 특위 출범	
	'25.10.16.	농어촌기본소득 특위 운영계획안 보고 등	
	'25.11.26.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추진 현황 공유 등	
	'25.12.29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안건 및 워킹그룹 선정 등	
	'25.11.13.	농어촌재생에너지 특위 사전 간담회	농어촌재생에너지 특위
	'25.12.11.	농어촌재생에너지 특위 과제 세부 논의 등	
	'25.9.9.	여성농어업인 특위 구성·운영계획 등	
	'25.9.23.	여성농어업인 특위 위촉식, 운영방안 및 의제 설정 등	
	'25.10.21.	여성농어업인 특위 기획단 세부운영계획 등	
	'25.11.27.	여성농어업인 특위 의제 확정 및 운영방안 등	
	'25.12.18.	여성농어업인 특위 의제별 포럼 및 연구용역 주제 등	
자문회의 (14회)	'25.9.16.	3농 기획자문회의 운영계획 및 실효성 제공 방안 등	3농 기획자문회의
	'25.10.1.	국정과제 분석 자료 발표 및 이슈 발굴 등	
	'25.10.23.	연구용역 추진과제 과업지시서 검토 및 보완	
	'25.11.10.	중점 추진과제 발굴 및 주요 이슈 추가 논의	
	'25.12.3.	중점 추진과제 발굴 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등	
	'25.12.15.	중점추진 아젠다(안) 검토 및 보완	
	'25.12.23.	중점추진 아젠다(안) 수정안 및 구성도 검토	
	'25.11.4.	수산 기획자문회의 운영계획 검토 등	수산 기획자문회의
	'25.11.20.	수산업 분과위 논의 과제(안) 검토	
	'25.11.24.	수산업 분과위 논의 과제(안) 선정	
	'25.11.3.	임업분야 정책 방향성 및 중점 추진과제 논의	임업 기획자문회의
	'25.11.19.	임업 분과위 중점 추진과제 마련 등	
	'25.11.26.	운영계획 및 의제방향 설정, 농지제도 개편방향 등	
	'25.12.5.	'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변화(발제), 의제설정 검토 등	농지제도 자문회의

#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 지명 현황

2026. 1.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 지명 현황

## 1. 추진 배경

- 본위원회 출범에 맞춰 신속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 원활한 소통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필요
    - **분과위원회별**(농업, 수산업, 임업, 농어촌, 농수산식품) 위원장 지명('26.1.5.)으로 분과위원회의 신속한 구성 및 활동 추진
- \*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제8조)

## 2. 분과위원장 명단

구분	분과위원장	소속 및 직책
농업분과위원회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수산업분과위원회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회장
임업분과위원회	박 현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농어촌분과위원회	허현중	(재)지역재단 이사장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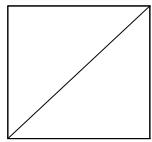
제 27 차 위 원 회

---

**심 의 안 건**  
**[ 1건 ]**



공개



의안번호	제2026-1호
심의 연월일	2026. 1. 6. (제 27 회)

의  
결  
사  
항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출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
제출연월일	2026. 1. 6.



## 1. 의결주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결

## 2. 개정이유

새정부 국정과제 중 먹거리 책임 강화 및 K-Food 수출 활성화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 내 식품정책팀을 신설하고자 함.

## 3. 주요 개정내용

사무국의 팀 구성 사항을 정비 (안 제9조제1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운영세칙)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1) 및 개정안 전문(붙임2)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정책팀, 농어촌정책팀, 농수산식품팀”을 “농업정책팀, 수산정책팀, 농어촌정책팀, 식품정책팀”으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장 사무국</p> <p>제9조(구성) ① 사무국은 총괄기획팀, <u>농어업정책팀</u>, <u>농어촌정책팀</u>, <u>농수산식품팀</u>, 대외협력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p>	<p>제5장 사무국</p> <p>제9조(구성) ① ----- <u>농업정책팀</u>, <u>수산정책팀</u>, <u>농어촌</u> <u>정책팀</u>, <u>식품정책팀</u>,----- -----.</p>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2026. 1. .

제정 2019. 6. 1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위원회**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2. 위원회의 안건 결정
3. 위원회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4.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당연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안건 제출)** ①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안건의 보고는 그 안건을 발의한 자가 한다. 다만 발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분과위원회

**제5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단체의 관련 전문가
2.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의 관련 전문가
3.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4.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

②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분과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이 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소분과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특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내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소분과의 장(이하 "소분과장"이라 한다)은 소관 분과위원장이 분과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소분과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특별위원회

**제7조(구성 및 운영 등)** ① 특별위원의 임기는 각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운영 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위원이 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회의 시 참석자, 논의사항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전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논의사항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사무국

**제8조(기능)** 법 제9조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협의안건의 기획 및 정책개발
2. 위원회 개최 및 회의자료 준비
3. 분과·특별위원회 개최 및 회의자료 준비

4. 위원회, 분과·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5. 각 위원에 대한 회의 자료의 배포
6. 위원회, 분과·특별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7.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평가
8.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사무국은 총괄기획팀, 농업정책팀, 수산정책팀, 농어촌정책팀, 식품정책팀, 대외협력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사무국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사무국은 국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 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 및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 ⑤ 기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분과위원회 간 협의·조정과 의사일정 협의 및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을 겸직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사무국의 총괄기획팀장으로 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논의사항 등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전하여야 한다.

## 제7장 보 칙

**제11조(경비집행)** ① 위원회 위원, 분과위원, 특별위원 및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자문에 대한 수당·여비·사례금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조사·연구·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직책수행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위원회 파견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사 및 복무 등)** ①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복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등에 공훈이 많은 자(단체를 포함한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무국의 직원에 대하여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추천 또는 상장·부상의 수여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9.6.18.>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16.>**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7.6.>**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1. .>**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p>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p>	
담당자	총괄기획팀장 송지숙
연락처	전 화 : 02-6260-1211 E-mail : jssong@korea.kr

제 27 차 위 원 회

---

토 론 안 건  
[ 2건 ]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분야별 기획자문회의 발굴 의제**

2026. 1.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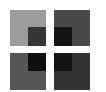


## 분야별 기획자문회의 발굴 의제[요약]

※ 발굴 의제는 각 소관 분과위에 보고·토의 후 논의 과제로 채택할 계획

안건명	주요내용
<b>① 3농 기획자문회의</b>	
농업	1. 농업인 정의 재정립과 소득정보체계 구축
	농업정책 대상인 농업인 인정문제 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정의체계 정비, 정책 수요 식별을 위한 농업소득정보체계 등의 제도개선안 마련 및 공론화 추진
	2. 농지제도 개편 방안
	농지 규제 강화와 완화 요구가 동시에 표출되고 농지법 개정안도 다수(33건) 발의됨에 따라, 현행 농지의 보존·이용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추진
	3. 농업인에 실익되는 농협 구조 개선
	농업인에게 이득이 되는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조합의 투명성 강화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개선방안 마련 및 공론화 추진
농어촌	4.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강화
	일상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진단, 농업 현장 의견 수렴, 농업인 기후대응 지원 방안 도출 추진
식품	5. 농업 세대전환 중장기 방안 (청년농포럼)
	농업 세대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대 간 갈등해소와 합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공론화를 통한 합의 과정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6. 농업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친환경 농업 확대 방안
식품	친환경농업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면적 확대 방안, 친환경 생산·가공·유통체계 개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등 논의
	7. 농어촌 읍면주민자치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 설계, 주민자치회 운영 기준 제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기준 사업과 연계한 재정·사업 지원 방안 마련
식품	8.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어업인 권리향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현행 헌법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조항 분석, 국내외 논의 동향과 시사점, 주요국 입법사례 조사 등을 통해 헌법 개정시 반영해야 할 농어업·농어촌 분야 개정 방안 제시
	9. 농축수산물 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 대응 개선방안
식품	농축수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 영향력 평가 및 소비자체감 물가와의 괴리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전달 및 홍보·교육 방안 제시
	10. 우리농산물 사용확대를 위한 K-FOOD 가공산업 활성화 추진
	식품제조 시 국산 원재료 사용량이 확대되도록 식품가공업체 대상 규제발굴, 지원 정책 강화, 판로 확대, 소비 촉진 방안 등 중장기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
11. 국가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먹거리 정책의 제도화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의 생산-소비 연계 안정적 식량공급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등 논의	

안건명	주요내용
② 수산 기획자문회의	
1. 지속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문화 발전방안	지속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 관련 주요 쟁점(낚시 구역·대상 지정, 라이센스·쿠폰제 도입 등) 관련 이해관계자 간 공론의 장 마련
2. 연근해 조업구역 구분 방안	어족자원을 둘러싼 연안-근해어업간 갈등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공론의 장 마련 및 의견수렴
3. 스마트 수산업을 위한 수산 기자재산업 육성방안	수산업의 현대화·스마트화를 위한 기반인 수산기자재산업에 대한 종합적·중장기적 정책 구조 개선 및 산업 육성 시책 마련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 종자산업 개선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생태계 및 어장 환경 급변에 따라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종자산업 관련 체계적인 육성방안 도출
③ 임업 기획자문회의	
1. 임업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제·재해보험·임업세제 개선 방안	농업 등 타업종과 비교하여 불리한 임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임업직불제 확대, 임업재해보험 확장, 임업 관련 세제 개선, 농업-임업 경계 명확화 등 논의
2.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산촌정책 체계 개편	산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위 및 인허가 규제를 개선하고, 산촌진흥지역 등 각종 지구·지역 제도 개선 등 산촌정책 체계 개편 방안 마련
3. 산촌 복지서비스의 사회보장제도 연계 방안	산림 치유원 등 산촌이 보유한 복지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촌지역 복지시설을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는 방안 논의
<참고: 특위 논의과제>	
<농어촌재생에너지 특위> ○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국내외 수법사례 점검 및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갈등해소 방안 도출
<농어촌기본소득 특위> ○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농어촌기본소득의 본 사업 전환에 필요한 제도·운영상 개선 사항 등 농어촌기본소득 확산과 지속적인 운영 방안 제시, 대국민 공감대 형성
<여성농어업인 특위> ○ 성평등, 여성농어업인 역할 증대	농산어촌의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정책 거버넌스 구축, 농산어촌 여성농어업인 일·가정 양립 실현 방안 논의



## 목 차

I. 3농 기획자문회의 발굴 의제	35
II. 수산 기획자문회의 발굴 의제	46
III. 임업 기획자문회의 발굴 의제	50
<참고> 특위 논의과제	53



## I . 3농 기획자문회의 발굴 의제

### 1 농업인 정의 재정립과 소득정보체계 구축

#### ① 추진 배경

- (현황)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농정의 필요가 증가하고, 정책 대상 농업인 인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문제점) 농가별 농업소득 파악이 어려워 정책 추진의 한계\*가 발생하고 재난·복지정책 수혜의 사각\*\*이 발생하며 정책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갈등 증가
  - \* 경영안정프로그램에 품목별 대표시장가격을 적용, 농가의 실제 수입을 보장하는데 한계
  - \*\* 재난지원금, 근로장려금·자녀장학금 등 사회적 복지 수혜 인정을 위한 소득파악 불가

#### ② 주요 내용

- (방향) 정책 대상 농업인의 정의와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소득정보 체계 개선 방안의 마련
- (활동) 농업인의 정의체계 정비, 정책 수요 식별을 위한 농업소득정보 체계 등의 제도개선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 공론화 추진
  - (정책)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농업인 정의와 농정 체계 조사, 농정수요 발굴·선정 체계 조사, 농업소득정보 체계 개선 방안 연구, 개선방안 도출 및 법령 정비(안) 제안
  -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토론\* 및 공청회,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 추진
    - \* 농업인단체(품목, 규모, 연령별)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공청회 등

#### ③ 향후 추진계획

- 농업분과위원회 의제 보고('26.1~)
- 농업분과위원회 검토·논의 및 본회의 보고('26.2~)

## 2 농지제도 개편 방안

### ① 추진 배경

- LH사태 이후 농지의 유동성 저하, 인구감소·소멸,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농지 소유·이용·전용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농지법 개정('21.7.)에 따른 농지취득·보유조건 강화로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유동성 감소\*, 한편으로 농지보전·이용에 대한 상반된 의견 지속도출
- \* 농지거래량 : '19년(39,237ha) → '20(46,306) → '21(50,948) → '22(36,332) → '23(25,346)

### ② 주요 내용

- (방향) 33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농지제도 전반을 재검토 후, 당정대에 자문의견 전달
  - \* 농지활용도 제고(9건), 농지 관리체계 개선(6건), 농지 유동화 촉진(18건)
  - (기본) 법안의 개별 검토보다 경자유전·식량주권을 대원칙으로 함
  - (방향) 경미한 법안 우선 검토, 과급력 큰 쟁점 위주로 집중논의 후 중장기 과제로 선정
- (활동) 농지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농지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 농지지문위원회 운영

- 구성 : 단장 조병옥(전국농민회)을 포함한 7인
  - \* 관련부처는 자문단 요구에 의해 필요시 참석
- (운영) 25년 12월(3회), 분과위원회 구성 후 TF로 연장 운영계획

- (정책) △농지법 개정안(33건) 쟁점 논의, △농지의 보존·이용에 관한 제도 개편방향 설정
-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토론 및 공청회,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 추진
  - \* 농업인단체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공청회 등

### ③ 향후 추진계획

- 농업분과위원회 의제 보고('26. 2~)
- 농업분과위원회 검토·논의 및 본회의 보고('26. 3~)

### 3 농업인에 실익되는 농협 구조 개선

#### 1 추진 배경

- (현황) 시장개방·기후위기 등 농업시장 환경변화와 농업 현안에 대한 대응 부족 지적 및 농협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요구 지속
  - \* 농업인들은 농협 본연의 경제사업 확대·강화를 희망하나 금융사업에 더 치중
  - \* 도시농협의 농업·농촌 지원 역할 강화 및 의무화 제도의 정비 필요성 제기
- (문제점)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나 농협의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비리와 부패문제 반복 발생 등 본연의 역할에 미흡

#### 2 주요 내용

- (방향) 조합원을 위해 농업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구조, 제도개선 방안의 마련
  - (활동)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경제사업 추진 방안, 조합의 투명성 강화 및 내부통제 체계구축 등에 대한 연구조사 및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추진
    - (정책) 농협경제활성화 계획수립과 관리, 평가 개선방안, 경제지주와 조합의 협력 제도화, 농협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및 법령 정비,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등
    -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토론\* 및 공청회,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 추진
- \*농협중앙회, 지역농축협, 농업인 단체 등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및 공정회 등

#### 3 향후 추진계획

- 농업분과위원회 의제 보고('26. 2~)
- 농업분과위원회 검토·논의 및 본회의 보고('26. 3~)

## 4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강화

### 1 추진 배경

- (현황) 기후 위기는 농작물 생산성 저하, 병해충 발생 증가, 농업 기반 시설의 손상 등으로 이어지며 농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 지난 20년간('00~'19) 재해건수는 앞선 20년보다 2배↑
  - \* 농업재해피해규모(천ha): ('15) 22 → ('17) 30 → ('19) 97 → ('21) 88 → ('23) 142
- (필요성) 기후 재난 일상화에 따른 농업분야의 실효성 높은 대응 방안과 현장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점검 필요

### 2 주요 내용

- (방향)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실효성 및 한계를 진단하고 농업생산의 안정성 및 국가 식량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포괄적인 방안 마련
- (활동)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진단, 농업인 지원 방안 설계 및 정책 방안 도출, 농업 현장의 의견수렴 등 추진
  - (정책) 국내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 현황 분석, 기후 위기에 따른 주요 해외 정책 사례 분석, <sup>△</sup>기후변화에 따른 농식품 공급망 변화실태 조사분석, 기후변화 시대에 적합한 농정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제안((가)식량주권특별법 제정, 현장 맞춤형 적응모델 개발 등)
  - (의견수렴) 농업인, 단체 대상 간담회 및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 추진

### 3 향후 추진계획

- 농업분과위원회 의제 보고('26.1월 ~)
- 농업분과위원회 검토·논의 및 본회의 보고('26.2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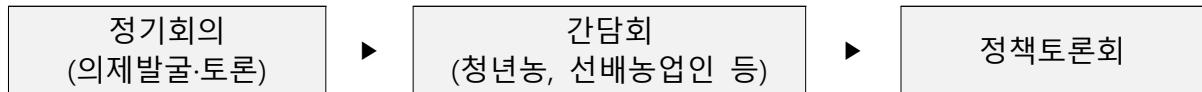
## 5 농업 세대전환 중장기 방안 [청년농포럼]

### 1 추진 배경

-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고, 현장과 소통·협력을 통한 농업대전환 필요(김호 위원장 취임사, '25.8.18)
- 농업 세대전환 중장기 농정 방향을 논의, 제시할 청년중심 논의기구의 위원회 내 운영을 제안(청년농업인간담회, '25.10.28)

### 2 포럼 구성 및 운영

- (목적) 새정부 국정과제인 농업 세대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청년 주도로 기성농, 전문가, 정부기관 등이 함께 협의·공감 형성
- (역할) 농업 세대전환을 위해 갈등 해소와 합의가 필요한 과제발굴 및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거버넌스 구현
  - \* 농지 등 농업자산의 이전과 배분, 농업 정의와 농업인 자격 등
- (주요내용)
  - 농업 세대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 도출과 토론
  -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등 공론 형성
- (기간) '26년 1월 ~ '27년 1월(12개월간) \* 필요시 연장 가능
- (위원 구성)
  - 청년농업인 등 20명 이내
  - \* 청년농업인단체 등 추천 구성
- (추진체계)



- 정기회의 : 매월 1회 \* 참여위원 자체 수시 토론회 별도 진행
- 운영방식 : 전문가, 선배농업인 등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간담회 진행
- 결과환류 : 의제 안건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3 향후 추진계획

- 청년농포럼 구성 및 제1차 회의('25. 12. 29.)
- 청년농포럼 의제 발굴 및 논의('26. 1월 ~)

## 6 농업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친환경 농업 확대 방안

### ① 추진 배경

- (현황) 친환경농업은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탄소중립실현의 중요한 수단
  -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2030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 2배 확대\* 추진
  - \* 친환경 재배면적: ('24) 38 천ha → ('30) 75 천ha
- (문제점) 친환경농업의 양적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친환경 농산물의 관행 농산물 대비 높은 가격과 낮은 접근성으로 소비확대가 곤란

### ② 주요 내용

- (방향) 기후변화 대응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하여 생산면적을 확대하고, 친환경 생산·가공·유통 체계 구축 및 건강한 소비문화 조성
- (활동) 친환경농업 확대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며,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율
  - (정책)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의 통합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친환경농어업법을 정비하고, 과정중심의 인증제도로 개선
  - 현장간담회, 공청회 등 친환경농산물 전주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홍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며, 현장토론회 등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여 친환경 생산·소비 확대 기반 구축

### ③ 향후 추진계획

- 농업분과위원회 의제 보고('26.1월~)
- 농업분과위원회 검토·논의 및 본회의 보고('26.2월~)

## ① 추진 배경

- (현황)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공동체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주민 주도의 지역 정책을 실행할 자치 역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주민 참여기반이 약화되면서 정책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고, 지속적인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정책적 지원체계 연계 미흡
- (변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심의 중\*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주민자치 활성화 여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現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심의로 회부('25.12.4)

## ② 주요 내용

- (방향)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개선 방안 도출
- (과제) 인구감소·고령화, 행정·생활권 분산 등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형 주민자치회 모델 설계 및 지원 체계 마련
  - <sup>△</sup>주민자치회 운영 모델(역할, 구성·운영 방식 등) 설계, <sup>△</sup>읍·면 단위의 생활권 구조를 고려한 주민자치회 운영 기준 제안, <sup>△</sup>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기존 사업과 연계한 재정·사업 지원 방안 마련
- (운영)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논의 추진

## ③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분과위원회 의제 제안 및 선정('26.~)
- 농어촌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 논의 및 본회의 보고(~'26.12)

## 8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어업인 권리 향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 1 추진 배경

- (현황) '90년대 중반 이후 농어업·농어촌은 WTO체제 출범, 기후변화, 농업과학기술의 발달 등 경제·사회·환경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음
  - WTO 출범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기후변화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팜 등 농업과학기술은 급속히 발달하였음
  - 농업·농촌·농민이 직면한 기후, 식량, 지역소멸 등 다중위기 심화
- (문제점) 농어업·농어촌관련 헌법 조항은 1987년 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우리 헌법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량주권 이념 등 농업의 가치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 등 농민의 권리 보장이 미비함
  - ☞ 이로 인한, ① 안정적인 공급의 위기, ② 먹거리 안전의 위기, ③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④ 먹거리 양극화 심화 등의 현상은 국가 정책에서 농업 후순위화,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국내 농업·농산물 보호정책 부재, 도농간극화와 농촌공동화 등에 기인

### 2 주요 내용

- (방향) 입법사례조사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간담회, 공청회 등)
  -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헌법에 담아야 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설정하고, 타당성을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인식조사·공청회 등 추진
- (활동) 현행헌법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조항 분석, 국내외 논의 동향과 시사점, 주요국 입법사례 조사 등을 통한 헌법 개정 방향 제시
  -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의견수렴(헌법개정의 타당성, 개정 방향 등), 국민 인식조사(국민 수용성), 관계부처 협의 등 추진

### 3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분과위원회 의제 보고('26.1월~)
- 농어촌분과위원회 검토·논의 및 본회의 보고('26.2월~)

## 9 농축수산물 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 대응 개선방안

### ① 추진 배경

- (현황) 농축수산물은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재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높음
  - \* 농축수산물 가중치 비중은 7.49%, 개별 품목단위 가중치 비중(곡물 0.63%, 채소 1.43%, 과실 0.64% 등)은 더 낮음(KREI, 2024)
- (문제점) 소비자가 체감하는 농축수산물의 물가가 높아, 농축수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부정적 인식 팽배

### ② 주요 내용

- (방향) 소비자체감 물가와의 괴리 분석 및 소비자 인식 조사
  - 농축수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 영향력 및 구성 품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소비자 체감과의 괴리요인을 분석하고 인식개선 방안 도출 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인식조사·공청회 등 추진
- (활동) <sup>△</sup>소비자물가지수(CPI) 현황 파악, <sup>△</sup>CPI에서 농축수산물 영향력 평가, <sup>△</sup>소비자체감 물가와의 괴리 분석, <sup>△</sup>국민인식개선, <sup>△</sup>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시 등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부정적 인식 개선
  - CPI 조사대상 품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관련부처 등), 소비자 인식조사(농축수산물의 물가영향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전달 및 홍보·교육 추진체계 정비안 도출

### ③ 향후 추진계획

- 농업분과위원회 의제 보고('26.1월~)
- 농업분과위원회 검토·논의 및 본회의 보고('26.2월~)

## 10 우리 농산물 사용확대를 위한 K-FOOD 가공산업 활성화 추진

\* 개념 정리 : K-Food(국산원료 가공), K-Food Culture(K-Food + 수입산 원료가공)

### ① 추진 배경

- (현황) 식품산업(제조업, 외식업)은 연평균 7.6% 성장률('23년 기준)을 보이고 있으나, 종사자 4명 이하의 업체가 80%이상 점유하는 영세한 구조
  - 식품제조 원료사용량은 최근 10년('14~'23) 연평균 1,770만톤이며, 이중 국산원료 사용량은 559만톤으로 약 31.6% 차지(6,003개 업체통계)
    - \* 국산원료 사용비중 90% 이상(배추, 무, 인삼, 흑삼 등 29개), 20% 미만(주정, 팥, 건조야채, 어육살, 물엿, 팥앙금, 전분당 등 45개)
  - 2023년 기준 대기업의 국산원재료 사용률은 24.8%으로 식품산업 성장이 국내 농업생산(농가 소득)과 직결되지 못하는 상황
  - ▣ 전통식품의 높은 국산원재료 사용률을 감안, 중소식품업체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연계 등 지원 정책을 통한 식품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 필요

### ② 주요 내용

- (방향) 국내산 원재료 사용량 확대를 위한 중장기 종합지원 정책 마련
- (활동) 식품 가공업체 규제 봉쇄, 지원 정책 강화(종합 패키지사업화), 판로 확대, 소비 촉진 방안 제시
  - (정책) 분과위 논의, 연구용역을 통해 K-FOOD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저해 요소 파악, 모범사례 봉쇄 → 관계부처 협의 → 개선책 제시
  - (의견수렴) 중소식품 가공업체, 농가 및 농업법인 참여 지역별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

### ③ 향후 추진계획

-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의제 보고('26. 2~)
-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검토·논의 및 본회의 보고('26. 3~)

## ① 추진 배경

- (현황)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식량주권 강화와 자급기반 확대 필요
  - \* 식량자급률 : '90) 70.3% ⇒ '00) 55.6 ⇒ '10) 54.1 ⇒ '15) 50.2 ⇒ '24) 48.5
- (문제점) 매년 수급불안 품목 발생 및 로컬푸드 생산물 급식 공급 중심 제한적, 부처<sup>(농업, 복지, 환경, 교육)</sup>간 협력 부족,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등 국가 먹거리 전략 계획 수립 필요

## ② 주요 내용

- (방향)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기반 구축으로 생산자-소비자 간 연계하여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량안보 보장 실현
- (활동) △지역의 생산-소비 연계 안정적 식량공급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국가·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부처 및 지역협력 구축 통합 추진
  - (정책) △전원의 아침밥 등 국민과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먹거리 정책의 체계적 발굴 및 확산 방안 도출, △「먹거리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각계 및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제고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공론화 추진
  -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토론\* 및 공청회,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 추진
    - \* 농업인단체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공청회 등

## ③ 향후 추진계획

-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의제 보고('26. 2월 ~)
-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검토 · 논의 및 본회의 보고('26. 3월 ~)

## II. 수산 기획자문회의 발굴 의제

### 1 지속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문화 발전 방안

#### ① 추진 배경

- (현황) 최근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720만명, '23년 기준) 및 일부 어종의 낚시 어획량 증가\*로 어업인-낚시인 간 수산자원경쟁 증대
  - \* 상위 5종(갈치·갑오징어·문어·주꾸미·한치) 어획량은 연근해 총어획량의 62%(9천톤)
  -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외 별도 자원관리 방안 부재로 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낚시어선 기관고장 및 충돌 등 안전사고 지속 발생\*
  - \* ('18년) 232척, ('19년) 278척, ('20년) 301척, ('21년) 294척, ('22년) 280척, ('23년) 329척
- (문제점) 이해관계자 간 소통 채널 부족으로 낚시인-어업인 간 갈등 심화

#### ② 주요 내용

- (방향) 공론의 장(전략대화기구 등) 제공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제3차 낚시진흥 기본계획안(해수부, '25.6)' 내용 중 낚시인·어업인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를 위주로 인식조사·토론 등 추진
- (활동) △낚시구역 지정, △대상 어종 지정, △라이센스·쿠폰제 도입, △'낚시어업 생산량조사', △낚시 교육·홍보방안 등 주요 쟁점 토론 진행
  - 쟁점 도출, 각 쟁점별 현황·인식조사, 이해관계자 토론(제도 도입 타당성, 국민 수용성, 제도 설계방향, 홍보방안 등), 관계부처 협의 등 추진

#### ③ 향후 추진계획

- 수산업분과의 의제 보고('25.12~)
- 전략대화기구 구성·운영('26.1~), 분과의 검토 및 본회의 보고('26)

## 2 연근해 조업구역 구분 방안

### 1 추진 배경

- (현황) 수산관계법령상 연근해어업을 어선 규모(10톤 기준)로 구분하고, 조업구역을 미구분하여 소형어선과 대형어선이 동일 해역에서 조업
  - 기후변화·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연안-근해어업 간 어장이용 갈등 심화, 어법특성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 효과 저하, 어선사고 증가 추세
- (문제점) 이해관계자 간 소통 채널 부족으로 연안-근해어업 간 갈등 심화
  - \* 어업특위 현장간담회(20.8.)에서도 연근해 조업구역에 대한 어업인들의 건의가 가장 많이 제기

### 2 주요 내용

- (방향) 공론의 장(전략대화기구 등) 제공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활동) 연근해 조업구역의 <sup>△</sup>구분 필요성, <sup>△</sup>구분 기준, <sup>△</sup>도입 방식, <sup>△</sup>수용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동향분석,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 추진
    - (사전조사) 구체적 쟁점 도출, 국내 조업구역 이용현황 조사, 해외 동향조사, 업종별·해역별·주어획어종별 어업인 인식조사 등
    -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토론\*,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 추진
- \* 구체적 의견수렴방식(권역별 간담회, 업종별 간담회 등)은 전략대화기구에서 검토 추진

### 3 향후 추진계획

- 수산업분과위 의견 보고('25.12~)
- 전략대화기구 구성·운영('26.1~), 분과위 검토 및 본회의 보고('26)

### 3 스마트 수산업을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방안

#### 1 추진 배경

- (현황) 어가 인구감소·고령화, 인건비 증가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따른 어업경영 악화 및 수산기자재의 기계화·자동화·무인화 요구 증가
  - 국내산업의 영세성 및 사후관리서비스 미흡, 낮은 기술·가격경쟁력으로 인한 수입기자재 의존도 심화, 분야별(어업·양식 등) 분산된 지원정책 등

##### <참고: 주요 개념>

- (수산기자재) 통상 수산업(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수산물유통업·양식업)에서 사용·활용되고 있는 기계·기구(도구)·자재·설비 및 자동화시스템 등 총칭
- (수산기자재산업)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생산·보급·이용 등과 관련된 제반 산업

- (필요성) 수산기자재산업은 성장잠재력 및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sup>\*</sup>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 육성·지원책 필요

\*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110조원, 국내 약 2.6조원으로 추정('21년 기준)

#### 2 주요 내용

- (방향) 지원정책 개선방향 도출 및 관련 법령 제정 촉구
- (활동) 국내 수산기자재산업의 스마트화·규모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종합적·중장기적 과제 및 추진계획 도출 추진
  - (정책) △해외 동향조사, △유사사례(농기계 등) 비교·분석, △관계자 인식조사, △정책 현황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추진
  - (법령) 현재 상임위 계류중인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촉구 안 검토

#### 3 향후 추진계획

- 수산업분과위 의제 보고('25.12~), 분과위 검토 및 본회의 보고('26)

##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종자산업 개선방안

### 1 추진 배경

- (현황)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 생태계 및 어장이

급변<sup>\*</sup>함에 따라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등 수산종자산업 지원 필요성 증가

\* (예) 최근 명태, 오징어 등 어획량 감소, 참다랑어, 방어, 삼치 등 어획량 증가

- 연안 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채묘장 감소 및 채묘율 감소, CITES 등재에 따른 종자 국제거래 제한 등 수산종자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요소 증가

#### <참고: 주요사례>

- 굴 : 부산신항 확대에 따른 한정면허 유지 한계, 연안수온 상승으로 자연채묘 종자 폐사 증가, 인공종자 비중 정체(17%)
- 뱀장어 : CITES 부속서 II 등재시 수입 규제 강화(국내 입식량 80%가 수입)
- 기타 : 김, 넙치를 제외한 대부분 양식용 친어(패)를 양식산에 의존하고 있어, 친어(패) 관리를 위한 지원책 필요

### 2 주요 내용

- (방향) 수산종자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 (활동)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내 수산종자산업의 종합적·중장기적 과제 및 추진계획 도출 추진

- △해외 동향조사, △관계자 의견수렴, △법·제도 현황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시범사업, R&D, 전담기관 등) △교육·홍보방안, 도출 추진

### 3 향후 추진계획

- 수산업분과위 의제 보고('25.12~), 분과위 검토 및 본회의 보고('26)

### III. 임업 기획자문회의 발굴 의제

#### 1 임업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제·재해보험·임업세제 개선 방안

##### ① 주진 배경

- (현황) 임업은 타 업종에 비해 임업직불제 규모가 작고 소득보전 효과가 미미하며 임업재해보험, 임업세제가 제한적이거나 부재
  - 현행 임산물 재해보험은 품목이 제한적이며, 산림경영의 핵심 자산인 입목 자체의 피해보상은 부재
    - \* 대형 재난(산불 등) 발생 시 입목피해에 대한 임업인의 손실 보전 어려움
- (문제점) 임업의 재난 및 세제 혜택이 타 업종과 불균형하여 임업인의 투자의욕 저하 및 경제적 부담 가중

##### ② 주요 내용

- (방향) 임업부문 지원을 농업 등 타 업종과 비교하여 형평성 있는 적용으로 임업·임업인·산촌의 소외없는 산촌경제 안전망 구축
  - 임업세제, 농림업의 역할 및 경계의 제도적 정비 등 제도 개선
- (활동) 산림경영의 핵심자산인 입목의 임업재해보험 도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 확대, 임업세제 개선, 농림업 역할 및 경계의 제도적 정비 추진
  - (정책)  $\triangle$ 정책현황 조사,  $\triangle$ 타 업종(농업 등) 비교·분석,  $\triangle$ 농림업 세제 개선 연구  $\triangle$ 개선방안 도출 및 법령 정비 추진
  -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토론,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 추진

##### ③ 향후 추진계획

- 임업분과위원회 의제 보고('26.1~)
- 임업분과위원회 검토·논의 및 본회의 보고('26.2~)

## 2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산촌정책 체계 개편

### 1 추진 배경

- (현황) 산촌은 국토의 43.5%를 차지하나,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소득수준도 최저
  - 농어촌에 비해 산촌의 고령화 심각\*. 40대 이하 연령층 지속 감소
- \* 65세 이상 고령인구: 농가 52.6%, 어가 48.0%, 임가 52.8%(2023년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 \*\* 가구당 평균소득('24, 백만원) : (전국) 72 > (어가) 64 > (농가) 51 > (임가) 38
- (문제점) 산림·환경·관광 등 규제 및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으로 산촌경제 활성화 저해

### 2 주요 내용

- (방향)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여 산촌경제 소득수준을 높이고, 지구·지역 등 산촌정책 체계를 정비
  - 산촌경제 활성화(임업·관광·창업 등)를 위한 맞춤형 산촌구조 정비
- (활동) 보호구역 등 행위 규제, 환경·관광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해소, 산촌진흥지역 등 각종 지구·지역의 산촌정책 체계 정비 추진
  - (정책) △국내 현황조사, △해외사례 비교·분석, △산촌정책 활성화 법령정비 연구 △개선방안 도출 및 법령 정비 추진
  -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토론,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 추진
  - (법령정비) 관계부처(산림청, 환경부 등) 내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 정비

### 3 향후 추진계획

- 임업분과위원회 의제 보고('26.1~)
- 임업분과위원회 검토·논의 및 본회의 보고('26.2~)

### 3 산촌 복지서비스의 사회보장제도 편입 방안

#### 1 추진 배경

- (현황)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sup>\*</sup>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농산촌 사회보장 혜택은 미미한 수준
  - 농산촌 복지시설(치유원, 마을시설 등)은 정신·만성질환 예방효과가 있으나 사회보장제도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건강보험 지출규모 : ('17) 63조 → ('24) 98조 / 적자규모 : ('24) 5조원
- \*\* 예방효과 검증 : 혈압(서울대·산림과학원, 2022), 우울·불안(산림치유원, 2022) 등
- (문제점) 농산촌 복지시설이 의료·건강서비스와 연계가 되지 않아 농산촌 사회보장 혜택이 미비하고 농산촌 경제 활성화 저해

#### 2 주요 내용

- (방향) 농산촌내 복지시설(치유원, 마을시설 등)의 사회보장제도 편입으로 국민건강 및 농산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농산촌 복지시설의 건강 기능을 '공공 건강관리서비스'로 제도화
- (활동) 농산촌지역 복지시설(치유원, 마을시설 등)의 국민건강보험 연계(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각종 농산촌지역 보건·복지제도 연계 추진
  - (정책) △국내 복지시설 현황조사, △사회보장제도 적용·분석 연구, △해외사례 비교·분석 △법령정비 연구 △편입 방안 추진
  -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토론,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 추진
  - (법령정비)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산림청) 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 및 건강관리서비스 관계 지침 정비

#### 3 향후 추진계획

- 임업분과위원회 의제 보고('26.1~)
- 임업분과위원회 검토·논의 및 본회의 보고('26.2~)

## 1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

### ① 추진 배경

- (현황) 농어촌 지역은 태양광·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확산의 중요한 잠재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의 집적화·규모화 및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추진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
- 정부 핵심 공약인 농어촌재생에너지 확산 및 전환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재생에너지특위를 신설·운영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

### ② 주요 내용

- (방향)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모델을 마련하고, 제도개선과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갈등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확산 및 자립 기반 조성
- (활동)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국내외 수범사례 점검 및 전문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갈등해소 방안 도출
  - (정책) 재생에너지 수범 모델 확산 및 표준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규제개선, 주민참여 제도화·이익배분 기준 수립 등 수용성 제고방안
  - (의견수렴) 지역별 간담회·토론회를 통해 참여 동기 유발, 갈등 조정 등 추진 과정에 대한 수범사례 지역 노하우 공유

### ③ 향후 추진계획

- 특위 소분과별(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운영, 의제 본회의 보고 및 정책 반영(26.1~)

## 2 농어촌 기본소득

### ① 추진 배경

- (현황) 농어촌의 균형성장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이 국정과제로 제시됨에 따라 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정부 핵심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기본소득특위를 신설·운영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
-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 주민 월 15만 원 지급(농식품부, '26년 2,341억 원)

### ② 주요 내용

- (역할)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수용성·실현 가능성 제고 위한 논의 플랫폼
  - 기본소득의 개념·목적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 목소리 수렴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 시범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본 사업 전환에 필요한 제도·운영상 개선사항 도출
  - 재원 지원 및 연계 등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제시
- (운영) 정기적 회의(월1회)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논의 추진

### ③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의제 선정('25.11~)
-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안건 검토·논의 및 본회의 보고(~'26.9)

### 3 여성농어업인 특별위원회 논의과제

#### ① 추진 배경

-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업의 미래세대 구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증대 등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강화방안 마련, 개별농민 단위의 정책 요구가 높아지는 등 지자체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필요성 제기

#### ② 주요 내용

- (구성 · 운영) 여성농어업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분야의 단체 · 학계 · 전문가 및 정부 ·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 (구성) 정영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총 15명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 15인 아니면 위원으로 구성
  - (운영) 2025. 9. 23. ~ 2026. 9. 22.(1년) \* 필요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 (활동내용) <sup>△</sup>'21~'23년 여성정책특위 운영 결과\* 공유, <sup>△</sup>'25년 여성특위 신규의제 발굴, <sup>△</sup>의제별 연구용역 · 포럼 운영, <sup>△</sup>관련부처 협업 · 제도화 추진

##### 《 \* '21.~'23. 농어촌여성정책특위 활동사항 》

- 운영기간 : (1기) '21.4.1.~'22.3.31(15명), (2기) '22.4.15.~'23.3.31.(13명)
  - \* 특위위원장 김영란(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체계 구축방안 논의 등
- 추진결과 : ①농촌여성포럼개최(4회), ②연구용역 추진(1회), ③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마련 등

#### ③ 향후 추진계획

- 각 의제별 연구용역 · 포럼 운영('26.1.~8.), 특별위원회 검토 및 본회의 보고('26.9.)



##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약칭[안]

2026. 1.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약칭(안)

### ① 추진 배경

- 현재 각종 보도자료 등에서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여러 약칭이 혼용(농어업특위, 농특위, 농어업위)되어 사용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를 국민께서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워 명확히 정할 필요

<참고(추정치): 최근 1개월간(네이버) 약칭별 검색 횟수 및 콘텐츠 발행량 비중>

구분	최초등장일	검색량		
		합계 (비중)	PC	모바일
합계		580회	290	290
농어업특위	검색불가	20 (3.4%)	10	10
농특위	'18.12.5.	520 (89.7%)	250	270
농어업위	'23.6.26.	40 (6.9%)	30	10

### ② 기존 약칭 경과

- 농어업특위('02.~'09.):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 제 1차 회의('02.3.22.)에서 '농어업특위'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키로 의결하고,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업무 종료 시('09.12.31.) 까지 사용
- 농특위('19.~'22.): 문재인정부 국정과제(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에 따라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19.4.25.)하고, 약칭 사용에 대한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제1차 본회의('19.6.18.)부터 '농특위' 명칭 사용
- 농어업위('23.~'25.8.): 어업과 수산 분야도 연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어 제31차 운영위원회('23.4.6.)에서 위원회 약칭을 '농어업위'로 변경키로 결정

### ③ 약칭 검토(안)

- ① (관련규정 참고) 위원회 약칭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정부조직약칭 규정 등 관련 규정 참고 가능

**<정부조직약칭기준 제3조(원칙)>**

- ① 약칭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3음절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약칭은 중앙행정기관의 원 명칭, 대중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② (수산업계 요구) 과거 수산업계 등의 의견을 고려, '농어업특위', '농어업위'가 약칭으로 사용됐고, 현재 법령 제명 중 "농어업"이 포함된 법령은 약칭에 "농어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도 참고할 필요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농어업경영체법), 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에관한법률(후계청년농어업인법),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농어업고용인력법) 등

- ③ (타위원회 사례) 현재 각종 위원회의 약칭 사용 시 위원회는 "○○위"로 표기하고, 특별위원회는 "○○특위"로 표기하는 사례 대다수

\*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

\* 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등

### ④ 토론 사항

- ① 우리 위원회의 약칭을 정해야 할지 여부
- ② 약칭을 정한다면 어떤 약칭이 좋을지 토론

## □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행안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예규는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약칭, 영어 명칭, 그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 사용에 적용한다.

**제3조(원칙)** ① 약칭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3음절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약칭은 중앙행정기관의 원 명칭, 대중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약칭은 다른 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고, 부정적 표현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한다.

<별표: 중앙행정기관의 약칭(위원회 발췌)>

연번	기관명	약칭	연번	기관명	약칭
4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4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57	국가교육위원회	국교위
46	금융위원회	금융위	5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 □ 법령 제명 약칭 기준(법제처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10음절 이상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제명에 적용한다. 다만, 10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본 원칙)** 법령 제명을 약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른다.

- ① 가능하면 짧게 약칭할 것. 다만,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약칭할 수 있다.
- ② 법령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법령의 내용을 활용하여 약칭할 수 있다.
- ③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예시: 농어업 관련 법령 약칭>

법령 제명	약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어업고용인력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법

